# 「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」 공공분양 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

-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,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의한 공공주택 및 「주택법」에 의한 국민주택입니다.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35조(국민주택의 특별공급) 및 제45조(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)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.
-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, 선정 방법은 해당기관의 추천순위에 의하며,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.
-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(추천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)로 선정·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(www.applyhome.co.kr)에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.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- 예비대상자도 해당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하셔야 예비 대상자의 지위가 유지되며, 청약 미신청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사업주체는 선정·통보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청약 접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별 안내를 하지 않으며, 특별공급 대상자는 청약 신청일에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, 한국부동산원(청약홈 www.applyhome.co.kr) 인터넷 청약접수 및 동·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,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(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)의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.
-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 책임지지 아니하므로,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자를 충분히 안내하고 재검증하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본 안내문 상의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 1. 사업개요 및 공급세대

■ 위 치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34-1번지 등 7필지					
■ 공급규모	공동주택(아파트) 지하 3층, 지상 21층, 4개동, 총 24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					
■ 시행/시공	시행위탁 : 성남시 / 시행수탁 : 성남도시개발공사 시공 및 분양주체 : 금호건설㈜					
■ 입주예정	2025년 07월 예정	■ 분양문의	1551-1356			

■ **공급대상** (단위: m², 세대)

주택	주택형 (전용면적기준)	약식 표기	주택공급면적(m²)		기타공용면적	게야	공급	기관추천	
구분			주거 전용면적	주거 공용면적	소계	(지하주차장 등)	계약 면적	세대수	특별공급 대상세대수
	74.9892	74	74.9892	22.0817	097.0709	60.2956	157.3665	71	6
국민 주택	84.9746A	84A	84.9746	22.3671	107.3417	68.3247	175.6664	71	6
주택	84.9922B	84B	84.9922	22.7398	107.7320	68.3388	176.0708	30	3
	84.9779C	84C	84.9779	23.4958	108.4737	68.3272	176.8009	70	9
합계							242	24	

※상기 공급개요(면적 등)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인·허가(사업계획변경 승인 등) 변경 등으로 인하여 내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■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5조 : 공급세대수의 10%내 범위 / 제45조 : 공급세대수의 5% 범위) (단위 : 세대)

구분			74	84A	84B	84C	합계
	장애인	경기도	<b>2</b> (10)	<b>2</b> (10)	<b>1</b> (5)	<b>2</b> (10)	<b>7</b> (35)
		서울시	-	-	-	<b>1</b> (5)	<b>1</b> (5)
		인천시	-	-	-	<b>1</b> (5)	<b>1</b> (5)
제35조	중소기업 근로자		<b>1</b> (5)	<b>1</b> (5)	<b>1</b> (5)	<b>2</b> (10)	<b>5</b> (25)
	10년이상 복무군인		<b>1</b> (5)	<b>1</b> (5)	<b>1</b> (5)	<b>1</b> (5)	<b>4</b> (20)
	장기복무제대군인		<b>1</b> (5)	<b>1</b> (5)	-	<b>1</b> (5)	<b>3</b> (15)
	북한	·이탈주민	<b>1</b> (5)	<b>1</b> (5)	-	<b>1</b> (5)	<b>3</b> (15)
제45조 국가유공자 등		<b>4</b> (20)	<b>4</b> (20)	<b>2</b> (10)	<b>2</b> (10)	<b>12</b> (60)	

- ※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 배정된 세대수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.
- ※ 괄호() 안의 표시는 예비대상자 세대수입니다.
- ※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26조 2에 의거 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(예비추천자)를 선정하며, 당 사업지는 배정세대 수의 500%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.

## 2. 분양 일정(예정)

구분 일정		비고
입주자모집공고일	2024.02.29.(금) 예정	· 한국부동산원 '청약Home' 홈페이지(www.applyhome.co.kr) · 당사 홈페이지 (www.bdkhapt.co.kr) 및 일간신문
분양사무실 및 사이버모델하우스 오픈 2024.02.29.(금) 예정 ·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342(테마폴리스빌딩2층,110호)[분당 금호어울림 · 당사 홈페이지 (www.bdkhapt.co.kr)		·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342(테마폴리스빌딩2층,110호)[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] · 당사 홈페이지 (www.bdkhapt.co.kr)
특별공급 접수일자 [인터넷청약 원칙]	2024.03.11.(월) 예정	· 한국부동산원 '청약Home' 홈페이지(www.applyhome.co.kr)  ※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※ 고령자(만 65세이상)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계층에 한하여 분양 사무실 방문접수 가능하나, 가급적 인터넷 신청을 권함  ※ 분양 사무실 방문 시 자격입증서류 및 공동인증서 지참 필수
당첨자 및 동・호수 발표 2024.03.19.(화) 예정		· 한국부동산원 '청약Home' 홈페이지(www.applyhome.co.kr) 개별조회

- ※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또는 인·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,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F자모집공고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, ②금융인증서, ③네이버인증서, ④KB국민인증서,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- ※ 단,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(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)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.
- ※ '18.05.04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은 인터넷청약(청약Home) 신청(서류제출 없음)이 원칙이며, 노약자,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주택전시관에서 접수(10:00~14:00) 가능합니다. 단, 주택전시관에서 접수하실 경우 특별공급 신청서류 및 공동인증서 등 지참이 필수입니다. (필요서류는 대표번호로 별도 문의) 기관추천 대상자 명단은 2024.03.06.(수)14:00시까지 회신을 요청드립니다. 기간 내 미 통보시 특별공급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
- 예정이오니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 3. 신청자격

#### ■ 신청자격

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(경기도,서울특별시,인천광역시)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**무주택세대구성원**으로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35조(국민주택의 특별공급) 및 제45조(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)에 의거,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(당첨대상자 및 예비대상자)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
- (당첨대상자) : 해당 기관에서 '당첨자'로 선정 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'당첨자'가 되는 분
- (예비대상자) : 해당 기관에서 '예비자'로 선정 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'당첨자'가 될 수 있는 분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
- ※ "무주택세대구성원"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, "세대"란 다음 각 목의 사람(이하 "세대원"이라 한다)으로 구성된 집단(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)을 말한다.
  - 가. 주택공급신청자
  - 나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
  - 다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, 이하 같음)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
  - 라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, 이하 같음)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
  - 마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시람

추천대상자	입주자저축 구비여부
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	필요 없음
북한이탈주민, 장기복무 제대군인, 10년이상 복무군인, 중소기업근로자	입주자저축(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저축)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

## ※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

-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
- ② 신청자 또는 세대구성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(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분) ③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청약 제한 기간(당첨일로부터 1년)내에 있는 경우
- ④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(과거 3자녀 우선공급, 노부모부양우선공급 포함)을 받은 분 및 그 세대 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.(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. 단,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5조 제1항 제12호 내지 제14호 해당하는 경우와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)
- 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
- ⑥ 입주자저축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(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 제외)

#### ■ 당첨자 선정방법

-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.
- 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동별, 층별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주택형별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며, 당첨동 호수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동호수 배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.
- 예비 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, 같은 주택형의 다른 유형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은 당첨자 발표일에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개별 조회 가능합니다.(개별통지 불가, 본인 확인)
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① 만 65세 이상인 자 ②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③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(태아 인정하지 아니함)를 둔 자가 있는 경우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,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

### 4. 유의사항

- 추천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수도권(경기도,서울특별시,인천광역시)지역에 거주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(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,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) 됩니다.
- 해당 주택건설지역(성남시)은 주택법」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의한 공공주택 및 「주택법」에 의한 국민주택(전용 85m'이하 주택)이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4조에 의거 재당첨제하은 10년이 적용되고 「주택법 시행령」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된니다.

구분	기준일(~로부터)	기간 관련 법령	
재당첨제한	당첨자 발표일	10년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4조
전매제한	당첨자 발표일	3년	「주택법」제64조,「주택법 시행령」 제73조

-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(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,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, 토지임대주택,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,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)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,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(민간 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)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,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,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(계약체결 불가,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)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, 기준, 일정, 방법,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가 정한 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.
- 당첨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,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.
-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,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.
-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 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(www.applyhome.co.kr) 또는 스마트폰앱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. [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(동호 배정) 및 계약불가]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개청(10.2.23)이전에 "3자녀 우선공급" 및 "노부모부양 우선공급"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.(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. 단,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1회 이상 공급가능)
  - 신청 주택형별 세부사항 등은 사이버모델하우스, 인쇄제작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-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며 안내문에 오류가 있다면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"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" 분양 사무실(1551-1356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 5. 참고자료



쾌적함과 편리함이 만나는 곳에

### 삶이 좋은 우리집이 있습니다







Tù.

※ 유럽에 제되자가 요간는 "급급주택 때문법 사례규칙, 현금의 대응을 합으켜받으며, 자세만 내용은 흡연이사 대표를 받는 통하여 확인되시키 바랍니다.



※ 위 평면도는 현재 마감재 등 세부사항이 미정인 상태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평면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홍보물 등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 6. 문의사항 안내

대표번호	1551-1356
홈페이지	www.bdkhapt.co.kr

#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배정내역(추천양식) - 양식

주택형	NO	유형	성명	주민등록번호	연락처
59A	확정	해당 특별공급 유형 명기	XXX	XXXXX-XXXXX	XXX-XXXX-XXXX
59A	확정	해당 특별공급 유형 명기	XXX	XXXXXX-XXXXXXX	XXX-XXXX-XXXX
59A	확정	해당 특별공급 유형 명기	XXX	XXXXXX-XXXXXXX	XXX-XXXX-XXXX
59A	확정	해당 특별공급 유형 명기	XXX	XXXXXX-XXXXXXX	XXX-XXXX-XXXX
59A	예비	해당 특별공급 유형 명기	XXX	XXXXXX-XXXXXXX	XXX-XXXX-XXXX
59A	예비	해당 특별공급 유형 명기	XXX	XXXXXX-XXXXXX	XXX-XXXX-XXXX
59A	예비	해당 특별공급 유형 명기	XXX	XXXXXX-XXXXXXX	XXX-XXXX-XXXX
59A	예비	해당 특별공급 유형 명기	XXX	XXXXXX-XXXXXX	XXX-XXXX-XXXX
59B					
54C					

<sup>※</sup> 해당 양식 외 기관별 자체 양식을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.

<sup>※「</sup>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26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%(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)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.

<sup>※</sup> 예비대상자 추천 여부는 기관이 정하고 예비자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.

<sup>※</sup> 각 주택형별 배정 세대수에 맞게 당첨대상자와 예비대상자 추천 명단을 작성하여 2024. 03.06. (수) 14시 까지 기관추천 대상자 명단 회신을 요청드립니다.